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3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정○○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793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5,018,421,110원, 지방



교육세 501,842,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8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내용에 따른 해석을 두고 법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쪽 마지막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제1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적어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속토지로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조세 법률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



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로 구별되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있다.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규정의 변동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종전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정비사업의 내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원고의 신뢰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 또는 그중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부속토지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1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29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판사 김○○

판사 김○○